



업무 흐름도



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/지도원 연락처

2013년부터 시행하는
「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평가」
준비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
무료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
해당 지역본부/지도원에 컨설팅
지원 등에 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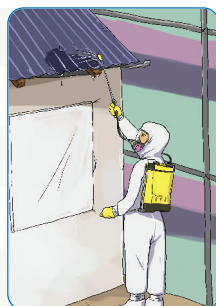
403-711
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(구산동)
직업건강실 직업환경팀 Tel. 032)510-0727
<http://www.kosha.or.kr>

기관명	주소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79 (대방동 49-6, 유탄양행빌딩 14,15층)	02-828-1674
서울북부지도원	서울시 중구 칠패길 5 (봉래동 1가 10, 우리빌딩 7,8층)	02-3783-8344
강원지도원	강원도 춘천시 경춘대로 103 (온의동 513, 대한고원공제회관 2층)	033-815-1021
부산지역본부	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8번길 26 (부곡동 64-31)	051-520-0582
울산지도원	울산시 남구 돌길로 146 (달동 615-8, 국민은행빌딩)	052-226-0542
경남지도원	경남 창원시 중앙로 159 (용호동 7-3)	055-269-0544
경남동부지도원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(석산리 1440-1,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)	055-371-7550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(동인동 2가 50-3, 호수빌딩 19, 20층)	053-609-0542
경북동부지도원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(대도동 124-4)	054-271-2043
경북북부지도원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 (임수동)	054-478-8022
경인지역본부	인천시 서구 한빛로 15 (가정동 491)	032-570-7263
경기남부지도원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(이의동 906-5,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)	031-259-7132
경기북부지도원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(신곡동 801-1,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)	031-828-1931
경기서부지도원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삭길 42 (고잔동 729-2, 센트럴시티 2층)	031-481-7536
경기동부지도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첫골로 17번길 3 (금곡동 106-2, 소곡회관 4층)	031-785-3323
부천지도원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(상동 538-3, 대신프라자 3층)	032-680-6540
광주지역본부	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31번길 (우산동 1589-1, 무역회관 8,9층)	062-949-8731
전북지도원	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덕1길 78 (인후동 1가 807-8, 노동부종합청사 4층)	063-240-8523
전남동부지도원	전남 여수시 무선 중앙로 72 (선원동 1285)	061-689-4931
제주지도원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495 (이도2동390, 중소기업지원센터3,4층)	064-797-7504
대전지역본부	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259 (문지동104-7)	042-620-5636
충북지도원	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3로 12 (가경동 1171, KT 3층)	043-230-7143
충남지도원	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25 (불당동 725, 미래시티빌딩 5층)	041-570-3432

2012-직업건강-47

『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』

제도 안내



「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 평가」 제도란?

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
석면해체·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, 보유장비의 성능, 보유인력의 교육이수,
능력개발 및 전산화정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

법적 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4항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
-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9호 「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



평가대상 및 평가주기

■ 평가 대상

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.

■ 평가 주기

평가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며,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

평가실시 기관

안전성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.



평가실시계획 공고

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 실시 계획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평가대상 업체에 알려드립니다.

※ 공단 홈페이지 주소 www.kosha.or.kr



평가기준

평가는 대상기관의 최근 1년간(평가일 기준) 석면해체·제거작업 업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및 항목(안)에 따라 실시합니다.

1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

- 현장 밀폐,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
-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
- 잔재물 처리 및 흙날림 방지조치
-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

2. 장비의 성능

- 음압기,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
-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
-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·사용
- 장비 매뉴얼,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

3. 보유인력의 교육이수, 능력개발, 전산화 정도

- 전문기술 능력
-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
-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
- 인력·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

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

평가 방법

-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.

- 평가대상 업체는 작업현장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석면해체·제거작업 3일 전에 해당 평가반에 작업일정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작업현장 평가를 미실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세요.



평가등급 결정

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(S, A, B, C, D)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.

다음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(D등급)을 부여합니다.

- ① 평가실시를 거부한 경우
-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

평가결과 공표

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.



평가결과 활용

- 고용노동부 장관은 「석면해체·제거작업 안전성평가」결과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관련 계약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「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